

취업규칙

제정 : 1992. 7. 7.
제1차 개정 : 1993.12.29.
제2차 개정 : 2002. 6.28.
제3차 개정 : 2005.12.30.
제4차 개정 : 2007.12.12.
제5차 개정 : 2015. 7. 9.
제6차 개정 : 2015. 8.31.
제7차 개정 : 2016. 4.27.
제8차 개정 : 2017. 1. 1.
제9차 개정 : 2019. 8.23.
제10차 개정 : 2019.11.15.
[제11차 개정 : 2023.12.18.](#)

제1장 총칙

제1조(적용원칙) 직원의 취업은 법령, 정관 및 이 취업규칙과 이에 따라 제정되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1절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제2조(복무) ① 직원은 공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모든 내규를 지켜야 하며 상위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성실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맡은 바 직책을 신속·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태도) 직원은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는 등 예절을 지켜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07.12.12. 개정)

제3조의3(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직원은 공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8.23. 신설)

제4조(비밀엄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12.12. 개정)

제5조(정치운동의 금지) (2019.11.15. 삭제)

제6조(겸업금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보증행위의 금지) 직원은 타인을 위하여 공사 앞으로 신원보증 기타 보증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부임기일) (1993.12.29. 삭제)

제10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주소, 본적, 성명 및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공휴일

제11조(근무시간과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15. 7. 9. 개정)

구 분	시 업	영업시간	휴게시간	영업종료	종 업	집무시간
평 일	오전 9시	오전 9시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 1시간	오후 4시30분	오후 6시	8시간

②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2005.12.30 삭제)

제12조(휴일) ① 공사의 유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4. [\(2023.12.18. 삭제\)](#)

② 국외사무소의 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휴일로 한다. (2017. 1. 1. 개정)

제13조(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직원 중 경비, 자동차운전, 전신전화, 청소, 기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규정된 근무시간 안에서 사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①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외에 따라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휴일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제11조에 준한다.

제15조(18세 미만자의 근무시간) 18세 미만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007.12.12. 개정)

제16조(일직 또는 숙직근무) 직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직 또는 숙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휴가 및 휴직) 직원의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3.12.29. 개정)

제3장 서약과 신원보증

제18조(서약서) 직원은 채용된 후 지체 없이 정하여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신원보증) ① 직원은 채용된 후 지체없이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3.12.29. 개정)

제20조(변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직원은 신원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2007.12.12. 개정)

제4장 급여

제21조(급여) ① 집단 및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제 관련사항을 포함한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 기타 모든 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여비 기타 근로조건

제22조(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여비 기타 근로조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여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퇴직 및 정년

제23조(퇴직) 직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3.12.29. 개정)

제2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015.8.31. 개정)

제7장 교육시설

제25조(장학금) (2007.12.12. 삭제)

제8장 안전과 보건

제26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제27조(질병에 걸린 자의 취업금지) 전염성의 질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금한다. (1993.12.29. 개정)

제9장 재해부조

제2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를 보상한다.

제28조의2(재해부조) 직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할 수 있다. (1993.12.29. 신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29조(포상) 업무상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1993.12.29. 개정)

제3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1.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내규, 서약사항 및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6.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부칙(제정)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부칙(2)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